

#### 4. 금융투자협회 규정

- 가.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(기관투자자 의무보유 확약 우선배정 제도 신설)
- 나. 자율규제위원회 운영 및 제재에 관한 규정 (감면 적용 가능한 표창 등의 유효기간, 횡수 등 제재 감면 제도 개선)
- 다. 금융투자전문인력과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 (임직원 징계 보고 및 자격제재 부과 사실 통보 명문화)
- 라. 금융투자회사의 증권 대차 및 공매도 업무처리 모범규준 (수탁 증권사 확인의무 신설에 따른 제도개선 사항 반영)
- 마. 금융투자회사의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(증권사 대체투자 관련 내부통제 강화 및 리스크 대응 능력 제고)
- 바. 대체투자펀드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(대체투자펀드 투자대상 관련 리스크 인식 및 관리 강화)
- 사. 대표주관업무 등 모범기준 (의무보유확약 가점 확대)
- 아. 신용거래설명서 (공매도잔고 공시기준 강화 등)

## 4. 금융투자협회 규정\*

### 가.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(2025/3/13 개정 · 2025/7/1 시행<sup>2)</sup>)

#### 1) 개정 이유

- 기관투자자 의무보유 확약 확대, 수요예측 참여자격 · 방법 합리화, 주관회사 역할 · 책임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반영하기 위함
  - IPO 시장을 단기차익 목적 투자에서 기업가치 기반 투자 중심으로 합리화하기 위한 금융위의 'IPO 및 상장폐지 제도개선 방안'(2025. 1. 21)에 따른 후속조치

#### 2) 주요 내용

##### 가) 의무보유 확약 우선배정 제도 신설(제2조, 제9조 제1항, 제14항)

- (의무보유 확약 우선배정 의무) 기업공개를 위한 대표주관회사는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을 우선배정하여야 함
  - (일반기관투자자) 기관투자자 중 우대배정(인수업무규정 제9조 제1항 제4호, 제5호에 따라 일정 비율 이상의 공모주를 받는 것) 정책펀드(벤처기업투자신탁,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) 이외의 기관투자자

\* 해당 내용은 매월 1일에서부터 말일까지 개정된 금융투자협회 규정 및 금융투자협회에서 공지하는 개정이유를 바탕으로 작성됨

2) 제17조의2 제4항, 제8항 및 <별표 1>의 개정규정은 2025년 4월 1일 이후 최초 증권신고서 제출분부터 적용하되, 그 이전에 발생한 불성실 수요예측행위에 대하여 개정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불성실 수요예측 참여자에게 제재의 감면이 더 큰 경우에는 개정규정을 적용

- (일반기관투자자 참여 재정물량) 우선배정의 기준으로서 수요예측 증 이후 청약일 전까지의 기간 중 산정한 일반 기관투자자에 대한 공모주식 배정 예상물량
  - 의무보유 확약 우선배정은 수요예측증 이후 청약 전까지 기간 중 기관투자자에 대한 배정주식을 산정하는 假 배정 단계부터 준수해야 할 의무
  -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假배정 물량과 청약·납입 결과에 따른 최종(실제) 배정 물량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假배정 물량(잠재 배정물량)을 우선배정의 기준으로 함
  - 전체 공모물량에서 일반투자자 이외의 자(일반청약자, 우리사주조합원, 우대배정 정책펀드)에게 배정할 물량을 차감하여 산정
  - 우리사주조합원에 배정할 물량은 증권신고서(발행조건확정)의 공모주식 배정내역에 기재한 수량으로 함
- (우선배정) 일반기관투자자 참여 배정물량의 40%(25년말까지 최초 증권신고서 제출분은 30%) 이상을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(선배정)하고, 참여 배정물량의 나머지를 선배정 받은 투자자를 포함해서 배정(후배정)
  - 후배정은 선배정 일반기관투자자와 미확약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하되, 선배정 일반기관투자자의 경우 잔여 물량(신청 수량 - 선배정 수량)이 있는 경우에 한함
  - 선배정, 후배정 후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 대표주관회사의 내부기준(대표주관회사간 협의 포함)에 따라 배정

**[의무보유 확약 우선배정 예시]**

1. 일반기관투자자 참여 배정물량(유가증권시장 IPO)				
공모주식	일반청약자	우리사주조합원	기관투자자	
			우대배정 고위험고수익 투자신탁등	일반기관투자자 참여배정물량
100만주	25만주	10만주(예상)	5만주	60만주
2. 의무보유 확약 우선배정(선배정 40% 이상 적용시)				
- 선배정 : 의무보유 확약 일반기관투자자 대상				24만주 이상
- 후배정 : 의무보유 확약 + 미확약 일반기관투자자 대상				36만주 이하

- (우선배정 책임성 강화)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배정 수량이 참여 배정물량의 40%(2025년말까지 최초 증권신고서 제출분은 30%)에 미달시, 대표주관회사는 공모주식의 1%(최대 30억원)를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 이상 보유하여야 함
  - (공모주식 1% 취득·보유) 구체적인 기준
    - 사모의 방법으로 발행된 주식을 신규상장 신청일까지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 이상 보유
    - 대표주관회사가 복수인 경우 합하여 1%를 취득하고, 인수계약에 따른 실권주 취득시 그 취득수량을 포함하여 산정

- (대표주관회사의 면책) 의무보유 확약 일반기관투자자에게 잠재배정물량의 40% 이상을 假배정 하였으나, 배정 받은 일반기관투자자의 미청약·미납입으로 최종 배정 미달은 면책
  - 다만, 대표주관회사의 적극적인 업무 영위 필요성 차원에서 의무보유 확약 일반기관투자자의 수요예측 등 신청 물량 부족으로 인한 배정의 미달은 면책되지 아니함

#### 나) 정책펀드의 의무보유 확약 확대(제2조 제9조 제1항 제4호, 제5호)

- (정책펀드 우대배정 요건 추가) 기업공개시 우대배정 정책펀드(벤처기업투자신탁,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)를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정책펀드로 한정
  -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하지 아니한 정책펀드는 일반 기관투자자(우대배정 정책펀드 이외의 기관투자자)로서 배정

#### 다) 의무보유 확약 위반 등 불성실 수요예측 등 참여자 제재 강화(제17조의2 제4항, 제8항, 별표 1)

- (기존) 기관투자자의 의무보유 확약 위반, 미청약 등에 대해 수요예측 참여제한 등 제재를 부과하고 있으나, 폭넓은 사유로 제재금·금전 갈음 등으로 대체
- (개정)
  - (제재금 전환 기준 구체화) 산정된 수요예측 참여제한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에만 참여제한을 제재금 또는 금전으로 전환을 허용토록 하여 제재 실효성 강화
  - (확약준수율 적용 기준 상향 등) 사후수습 확대 유도를 위해 감면을 위한 준수율 적용기준을 70% 이상에서 80% 이상으로 상향하고, 확약준수율은 위반 계좌에 대해 산정을 명시
  - (제재 가중 기준 추가) 상장 당일 의무보유 확약 위반 시 참여제한기간을 100분의 50 가중
  - (참여요건 위반자 제재 강화) 사모운용사 등의 수요예측등 참여요건 위반시, 제재의 기준을 공모주 배정금액이 아닌 수요예측등 신청금액으로 하고, 최대 24개월까지 제재
  - (복수의 위규행위 적용 기준) 동일 종목에 복수의 위규행위 발생 시, 수요예측 등 참여제한 기간이 최장인 것으로 제재
  - (감면 등 관련 제재 기준 계량화) 경제적 이익에 따른 감면의 축소 등 제재 산정 구체화
    - 위반금액에 가중 및 감면을 적용하여 수요예측등 참여제한 기간을 산정하되, 경제적 이익 상응 기간(경제적 이익/500만원의 몫) 만큼 감면의 폭을 축소
    - 제재금(또는 금전) 부과시 그 금액은 최대(참여제한 기간×500만원, 경제적 이익)로 함

**라) 사모운용사등의 수요예측등 참여자격 개선(제5조의2 제1항, 제6항, 제8항~제11항)**

- (위탁재산 참여요건 강화) 사모운용사 등이 위탁재산으로 수요예측등 참여시 등록기간, 운용규모 요건을 부과하고 투자일임 계약의 투자자 요건을 보완
  - (등록기간·운용규모 요건 부과)

기관투자자	등록기간·운용규모 요건
사모운용사 (① 또는 ②)	① 일반 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일 2년 경과 & 집합투자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 일평균 50억원 이상
	② 집합투자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 일평균 300억원 이상
투자일임회사 (③ 또는 ④)	③ 투자일임업 등록일 2년 경과 & 투자일임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 일평균 50억원 이상
	④ 투자일임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 일평균 300억원 이상
사모운용·투자일임경영회사	①~④ 중 어느 하나를 충족(단, 집합투자재산과 투자일임재산을 합하여 산정하지 아니함)하면 고유재산, 집합투자재산, 투자일임재산 모두 등록기간, 운용규모 요건 충족으로 인정

- (투자일임계약의 투자자 요건 보완) 투자일임재산으로 수요예측등 참여시 투자자에게 제외되는 기관투자자로서 사모운용사, 수요예측등 참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자 추가

- (위탁재산 참여요건 강화 면제) 다음의 경우 사모운용사, 투자일임회사의 위탁재산으로 참여시 등록기간·운용규모 요건 면제(고유재산 참여시 또는 투자일임계약 투자자 요건은 면제 불가)
  - (의무보유 확약에 따른 면제) 3개월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하거나, 정책펀드(벤처기업투자신탁,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)로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하는 경우
  - (한시적 면제) 제도개선 발표일(2025. 1. 21) 이전 설정·체결된 집합투자기구·투자일임계약은 2025년말(최초 증권신고서 제출분 기준)까지
    - 해당 집합투자기구 또는 투자일임재산의 설정일 또는 계약일이 2025년 1월 21일 이전임을 확인하고 확약서를 제출

**마) 재간접펀드 등 주금납입능력 정비(제5조의3 제1항)**

- (주금납입능력 중복 해소) 펀드에 투자하는 위탁재산의 주금납입능력은 위탁재산 자산총액(수요예측 참여일전 3개월 일평균)에서 피투자펀드 자산총액 보유분(수요예측 참여일 전일자)을 차감
  - (차감 예외) 기관투자자가 집합투자계약 또는 투자설명서 등으로 피투자펀드의 IPO 미참여를 대표주관회사에 소명시 차감 예외

**바) '거래실적 무' 외국 기관투자자 배정 제외(제9조 제5항 제6호 신설)**

- (공모주식 배정 제외) 대표주관회사는 '거래실적이 없고, 실재성 파악도 어려운' 외국 기관투자자를 공모주식 배정에서 제외
  - (예외) 해당 투자자가 공시된 재무제표 등 신뢰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여 해외에서 국내 기관투자자 해당 업무(예: 증권회사, 선물사, 운용사 등)의 영위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 배정 허용
    - 인·허가, 등록사항이 국내 기관투자자에 준하는 업무 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인·허가, 등록증의 경우에는 인정 불가

**사) 주관회사의 내부 배정기준 구체화(제15조 제1항 제9호)**

- (필수 포함요소) 기업공개를 위한 대표주관회사는 내부 배정 기준 마련시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함
  - ① 의무보유확약 우선배정 방법, ② 그룹(Tier)설정 및 그룹별 할당 기준, ③ 가중치 부여 기준, ④ 예외적용 기준, ⑤ 내부 승인 체계, ⑥ 자료보관 방법 등

**나. 자율규제위원회 운영 및 제재에 관한 규정 (2025/3/13 개정 · 2025/3/14 시행)****1) 개정 이유**

- 위법·부당행위를 한 회원의 임직원이 표창 등을 받은 경우 제재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한 규정에서 감면 적용 가능한 표창 등의 유효기간 설정, 횟수 제한 등을 통해 제재 감면제도를 개선하기 위함

**2) 주요 내용**

- 감면 적용 가능한 표창 등의 유효기간 설정, 횟수 제한 등을 통해 제재 감면제도 개선(제13조 제2항 신설)
  - (기존) 규정상 표창 등의 업무 관련성 또는 수여 받은 시기와 무관하게 제재 감면이 가능하며, 횟수 제한도 명시되지 아니하여 감면 범위가 다소 광범위함
  - (개정) 「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」(제50조 제3항)을 준용하여 '기간(10년 이내)', '업무관련성'을 감면 기준으로 명시
    - 위원회 의결일로부터 과거 10년 이내에 받은 것이 아닌 표창 등은 감면 적용 제외
    - 금융업무와 관련 없는 표창 등은 감면 적용 제외
    - 동일한 표창 등에 따른 감면은 1회로 한정

## 다. 금융투자전문인력과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 (2025/3/13 개정 · 2025/3/14 시행)

### 1) 개정 이유

- 임직원 징계 관련 보고 및 징계 내역 자료 제출 관련 규정을 명문화 하기 위함

### 2) 주요 내용

- 임직원 징계 보고 및 자격제재 부과 사실 통보 명문화(제3-12조 제6항)
  - (기존) 임직원 징계보고 및 자격제재 부과 사실에 대하여 해당 임직원에게 사전·사후 통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
  - (개정) 징계보고 회사가 본회에 징계보고 시 사전적으로 해당 임직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고, 본회의 자격제재 부과 사실을 사후적으로 해당 임직원에게 통지하도록 명문화
- 징계내역 확인을 위한 자료 제출 규정 명문화(제3-12조 제7항)
  - (기존) 금융회사의 징계보고 시 징계내역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자료 제출 관련 명시적 규정이 없음
  - (개정) 징계보고 내역(위법·부당행위, 위반법규 등)이 사실관계에 부합하는지 확인을 하는 자료 제출 규정 명문화
- 조문 정비(제3-12조 제5항)
  - (기존) 전문인력 해임보고, 징계보고를 10영업일 이내 하지 않는 경우 지연보고 사유서를 본회에 제출하도록 규정
  - (개정) 지연보고 사유서 제출 주체를 명확하게 규정
- 자격제재 감면제도 개선(제재양정기준 III.2.가.)
  - (기존) 표창 등의 업무 관련성, 수여 시기와 무관하게 자격제재 감면 가능
  - (개정) 감면 적용 가능한 표창 등의 유효기간, 업무 관련성을 명확하게 규정

## 라. 금융투자회사의 증권 대차 및 공매도 업무처리 모범규준 (2025/3/13 개정 · 시행)

### 1) 개정 이유

- 금융위원회의 ‘불법·불공정 문제 해소와 투자자 보호를 위한 공매도 제도개선 방안’(2024. 6. 13)에 따른 증권사 확인의무 신설 등 제도개선 사항을 반영하고, 금융감독원의 ‘공매도 통합 가이드라인’(2025. 1. 19) 상의 기준을 감안한 실무프로세스를 정립하기 위함

## 2) 주요 내용

### □ 대여증권 매도시 보유잔고 인정 기준 명확화(제5조)

- 대여증권 매도시, 대차계약 등에 근거하여 결제일까지 결제가 가능하다고 합리적으로 예측 가능한 경우에 한해 매도주문 이후 중도상환 요청을 할 수 있음을 명확화
  - ‘공매도 통합 가이드라인’이 제시한 대여증권 소유 인정시점과 통일성 유지 목적

### □ 수탁 증권사 확인의무 신설에 따른 준법확약서 및 대차거래정보 보관의무 점검결과의 징구 방법 일원화(제11조, 제12조)

- 위탁자가 공매도 내부통제 구축 기준에 따라 법규 준수 여부에 대한 사전 검토 실시 및 대차거래정보를 보관
  - 금융투자업규정 시행세칙 <별표 35>의 공매도 내부통제 구축 기준(제4조 제2항 제1호, 제9호)
- 증권사가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이행여부 점검기준에 따라 이를 저검한 경우 각각의 점검결과 징구를 대체 가능
  - 금융투자업규정 시행세칙 <별표36>의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이행여부 점검기준(내부통제 점검부문)

## 마. 금융투자회사의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(2025/3/13 개정 · 2025/5/13 시행)

### 1) 개정 이유

- 증권사의 대체투자 관련 내부통제 강화 및 리스크 대응 능력 제고를 위하여 일부 개정하기 위함

### 2) 주요 내용

#### □ 투자심의기구의 구성 및 운영의 합리화(제6-5조)

- 투자관련 심의기구 등 의사결정기구의 의결정족수 및 구성요건을 합리적으로 마련하여야 함

#### □ 투자자산 세부 정보 정기적 산출 및 관리(제6-6조의2)

- 투자형태, 만기분포, 투자지역 등 투자자산 관련 세부정보를 정기적으로 산출하고 관리하여야 함

#### □ CRO 등에 대한 재의요구권 부여 근거 마련(제6-8조 제6항)

- 투자 관련 의사결정기구에서 투자 심의 시 CRO 등에게 재의요구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규정

#### □ 거래소개자 세부사항 검토 및 기록(제6-8조 제8항, <별표 16-1>)

- 해외 투자 시 브로커 등 거래를 소개해 준 자(거래소개자)에 대한 세부사항(신용도, 업력 등)을 검토 및 문서화하여야 함

- <별표 16-1>에 따른 신용도, 업력, 거래소개자의 관련자 현황 등

□ 민감도분석 실시(제6-8조의2)

- 현금흐름 측정을 위한 다양한 케이스의 민감도분석을 실시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하고 의사결정기구에 보고하여야 함

□ 대체투자 계약 관리 의무 구체화(제6-8조의3)

- 대체투자 관련 계약 조건을 검토하고 관련 내부절차를 마련하며 리스크관리가 가능하도록 문서화

□ 외부전문가 선정 기준 구체화(제6-9조 제3항, <별표 16-3>)

- 해외 대체투자 자산을 평가·자문하는 외부전문가 선정 관련 기준을 마련하고 문서화

□ 블라인드 펀드 평가 기준 구체화(제6-9조 제4항)

- 블라인드 펀드의 경우 자산운용사의 운용인력, 운용절차 및 성과를 포함하여 평가 필요

□ 투자자산 모니터링 주기 명확화(제6-13조 제1항)

- 투자자산 건별로 연 1회 모니터링 수행하며 부실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투자자산에 대해서는 수시 수행

□ 손상차손 인식 및 대손충당금 설정(제6-15조의2, 제6-15조의3)

- 대체투자자산에 대한 조기 손상인식을 위한 손상차손 인식기준 마련 및 매 결산시 필요한 대손충당금 설정

**바. 대체투자펀드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(2025/3/13 개정 · 2025/5/13 시행)<sup>3)</sup>**

**1) 개정 이유**

- 대체투자펀드의 내부통제 강화 및 리스크 대응능력 제고를 위해 일부 개정하기 위함

**2) 주요 내용**

□ 모범규준의 목적 재정립(제1조)

- 대체투자펀드의 설정·운용에 있어 투자대상자산 관련 제반리스크 평가 및 관리 목적 이외에 투자자 보호 목적을 추가

3) 제9조제4항 및 제6항, 제9조의2의 규정은 규정변경예고(금융위원회공고 제2024-428호)된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일부 개정안 제260조 제2항의 시행일부부터 시행

- 대체투자펀드 투자대상 관련 리스크 인식 및 관리 강화(제4조)
  - 부동산 펀드 형태별 리스크 요인 추가 및 해외자산 투자 시 리스크 검토 결과에 대한 문서화
    - 공실 위험, 임차인 퇴거 위험, 추가출자 위험 등
- 투자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의 합리화(제5조 제5항, 제8항)
  - 투자심의위원회에서 CRO 등에 대한 재의요구권 부여 근거 마련
  - 투자심의위원회 등 의사결정기구의 합리적인 의결정족수 및 구성 요건 구비
- 거래소개자 및 현지 실사업체 선정 관리 강화(제5조 제6항, 제7항)
  - 해외 투자 시 브로커 등 거래를 소개해 준 자(거래소개자)에 대한 세부사항을 검토 및 문서화
    - <별표 3>에 따른 신용도, 업력, 거래소개자의 관련자 현황 등
  - 현지 실사업체 선정 시 거래상대방 등과 독립된 업체 선정 및 선정 기준 등 문서화
- 외부전문가 검토(제5조의2)
  - 해외자산에 투자시 외부전문가에 의한 법률실사, 세무·재무실사, 물리실사, 감정평가 등 의무 부여
- 계약 관리 의무 구체화
  - 대체투자 관련 계약 조건을 검토하고 관련 내부절차를 마련하며 리스크관리가 가능하도록 문서화(제5조의4)
  - 외부용역 계약 관련 증빙자료 기록·유지 및 이해관계자와의 외부용역 계약 시 제3자와 비교 통한 검토절차 마련(제6조 제3항, 제4항)
- 펀드 관련 수수료 등 비용 처리 기준 명확화(제6조 제5항~제7항)
  - 펀드 설정 실패 시 발생한 용역비용의 타 펀드 계상을 금지
  - 자산의 취득원가에 가산하는 비용의 범위 및 대출취급 수수료의 안분기준 등 마련
    - 기존 감독행정 사항인 ‘부동산펀드 등 자문수수료 지급 관련 내부통제 보완 필요사항’을 반영
- 투자자산 모니터링 주기 명확화(제7조 제1항)
  - 펀드 설정 이후 연 1회 모니터링을 수행하되 특이사항 발생 시 수시로 수행
- 대체투자펀드 자산에 대한 공정가치 평가 강화(제9조 제4항)
  - 사모펀드의 경우 수익자 전원 동의를 통해 공정가치 평가주기를 연 1회 보다 완화하여 적용 가능하였으나, 규정 변경예고(금융위원회공고 제2024-428호)된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」 시행 시부터 완화된 적용을 배제

- 재간접펀드의 평가정책 및 평가결과의 적정성 검토 의무 확대(제9조 제6항)
  - 해외 운용사의 역외재간접 펀드를 대상으로 평가정책 및 평가 결과 적정성 검토 의무를 부여하여 왔으나, 국내외 운용사의 재간접 펀드로 대상 확대
-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기준 명시(제9조의2)
  - 평가업무 담당 부서의 독립적 업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에 외부 전문가 포함
    - 운용 담당 임원과 평가 담당 임원이 분리되어 있지 않은 경우
- 리스크관리조직 독립성 강화(제3조)
  - 리스크관리조직에 운용부서 대비 적절한 인원을 배치하고 운용부서와 독립적 지위에서 별도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요구
    - 의사결정기구에서 안건 상정 시 운용부서와 별도의 안건 작성 등
- 독립적인 성과보상체계 마련(제11조)
  - CRO와 준법감시인은 대체투자 성과가 보상과 연동되지 않도록 독립적 기준의 성과보상체계를 마련하도록 요구

## 사. 대표주관업무 등 모범기준 (2025/3/13 개정 · 2025/4/1 시행)<sup>4)</sup>

### 1) 개정 이유

- IPO 시장을 단기차익 목적 투자에서 기업가치 기반 투자 중심으로 합리화하기 위한 금융위의 'IPO 및 상장폐지 제도개선 방안'(2025. 1. 21)에 따른 후속조치를 반영하기 위함

### 2) 주요 내용

- 의무보유확약 가점 확대(3부 5.)
  - (기존) 의무보유확약에 대해 기간에 따라 공모주 배정시 가점을 부여
  - (개정) 의무보유확약을 확대하기 위해 최대 가점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하고 가점 확대

기존				⇒	개정				
3개월	1개월	15일	미확약		6개월	3개월	1개월	15일	미확약
5	4	1.5	1		7	5	3	2	1

4) 2025. 4. 1 이후 증권신고서 최초 제출분부터 시행하되, 의무보유확약 가점 확대는 2025. 7. 1 이후 증권신고서 최초 제출분부터 시행

## □ 초일참여 가점제 합리화(3부 5.)

- (기존) 초일참여 가점수준이 높아 초일 쏠림현상을 야기하고 수요예측의 순기능을 저해
- (개정) 특정일에 쏠리지 않고 1~3일차에 골고루 분배되도록 전반적 가점을 낮추는 방향으로 개정

기존			⇒	개정	
1일차	2일차	3~5일차		1~3일차	4~5일차
3	2	1		1.5	1

## 아. 신용거래설명서 (2025/3/31 개정 · 시행)

## 1) 개정 이유

- ‘공매도 제도개선 방안’(금융위, 2024. 6. 13) 개선 사항 중 공매도 잔고 공시 확대 및 공매도 거래자의 전환사채(CB)·신주인수권부사채(BW) 취득 제한 사항을 신용거래대주 시 유의사항에 반영하기 위함

## 2) 주요 내용

- 공매도잔고 공시기준을 보고 수준으로 강화(금액 기준 추가)하고 CB·BW의 발행계획이 공시된 이후 전환가액 또는 신주인수권행사 가액이 결정되기 전 공매도한 자의 CB·BW 취득 금지 내용 신설

선임연구원 신경희(02-3771-0854, skh0828@kcmi.re.kr)